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세계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각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업무협력 방안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사무처에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민관협력사업의 다양화로 위탁사무가 확대 되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 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전국협의체인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5호 중 “지방의제 21과”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업무 협력

제5조제3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 3인 이내의”를 “사무처는 사무처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

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21조 중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에 따라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인천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u>인천광역시의제 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인천광역시 의제 21실천협의회</u> 를 ----- ----- ----- -----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인천의제 21”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기업 및 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기업 및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1. ----- <u>이란</u> ----- ----- ----- ----- ----- ----- -----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	2. ----- <u>이란</u> ----- ----- ----- ----- -----

한다.

제3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지방의제 21과 관
련된 업무의 추진

제5조(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분과위원장,
기초의제협의회 대표 2인의 위
원을 포함하여 “인치의제
21”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
은 시민 또는 기업인 중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
부시장·환경녹지국장·인천광역
시의회 산업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제7조(임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제3조(협회의 기능) 인천광역
시 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증
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업무
협력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지역발
전에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5조(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

제7조(임기) -----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사무처) ① ~ ③ (생략)

④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생략)

② 상임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사업의 추진) 협의회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11조(사무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무처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경비의 지원) -----

----- 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9조(협력사업의 추진) -----

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
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
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
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
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
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 전국지속가능발전협
회 -----

제21조(시행규칙) -----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군·구와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7.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시 본청의 실·국·본부, 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연관이 있는 기관을 점검·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점검·평가의 대상업무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④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점검·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